금융사 37곳 '정보 유출 47.3만건'… 10억 탈취도

금융위, 전 금융권 현황 점검
한달간 침해 신고 40건 접수
연말까지 총 580곳 전수조사

금융권 37개사에서 한달여간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금융사에서는 약 10억원 규모의 자금 탈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업권을 비롯해 가상자산업계까지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이후 이달 3일까지 금융회사 37곳에서 총 40건의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 금융투자 5곳, 보험 3곳,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1곳, 여신전문금융 2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4곳, 전자금융업 10곳, 가상자산업 3곳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14일 체크리스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소규모 증권·보험사를 비롯해 전자금융업, 온투업, 가상자산업계 등에서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금 탈취는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체, 온투업체에서 발생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과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 대상이 됐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직접적인 자금 손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통 금융업권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과 온투업,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업권까지 포함해 약 580개사를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외부 접점 관리 및 의사결정 절차 등 내부통제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관리대장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내일 입동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5일 인천 서해구 한 연탄 보급소에서 관계자들이 배달할 연탄을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中 거점' 투자리딩방 운영해 142억 사기

조직원 13명 검거… 5명 구속
피해자 292명… 총책 추적 중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고수익 투자를 내세워 14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뒤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292명으로부터 약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개설책과 관리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개설책은 계좌당 500만~700만원을 받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조직에 제공했다.

계좌 관리책은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이체했으며, 자금 세탁책은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 약 1억2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의 소재를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선거 여론조사 허위응답' 167명 송치

선거구민 행세하며 조사 방해
휴대폰요금 청구지 바꿔 참여

율해 전북지역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행세를 하며 여론조사를 방해한 응답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업무방해 위반 등 혐의로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평균 15% 안팎이던 응답률이 비슷한 시기 다른 업체의 조사에서는 40~50%까지 치솟으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지역의 여론조사 조작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응답률이 높은 5개 지역을 추렸다. 이 중 허위 응답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임실군과 진안군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임실군이나 진안군으로 변경해 해당 지역 선거구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동자들은 가족과 지인에게도 청구지를 옮기도록 요구했으며, 당시 진안군수 후보였던 A씨도 주동자에 포함됐다.

지역별 송치 인원은 임실군 103명(주동자 22명·단순 응답자 81명), 진안군 64명(주동자 12명·단순 응답자 52명)이다.

다만 허위 응답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수 행위나 A씨와 다른 후보자, 정당의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아이패드 받고 해임된 공무원… 法 "정당"

발주공사 하도급업자가 제공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219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의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219만4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해임되자 직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징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공사에서 원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도 원도급업체 명의로 준공 서류를 작성해 검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B씨가 A씨의 현재 또는 향후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공사비 과다 책정' 배임 손해 여부 大法 "계약 당시 기준으로 따져야"

'배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공사대금 과다 책정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종중 토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종중 원들은 2020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터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의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0월 친분이 있던 무등록 시공업자 C씨와 3층 건물 증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비 15억3000만원에 A씨가 돌려받기로 한 2억원을 더한 17억3000만원이었다. 공사대금은 계약일 3억원, 골조 공사 완료 후 5억원, 내외부 공사 착공시 5억3000만원, 준공 후 2억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까지 공사대금 10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석달 뒤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건물은 외관만 완성됐을 뿐 내부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후 A씨 등은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업무상횡령과 사인위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사 중단 당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수 상한을 8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미 지급한 10억7000만원이 이를 초과한 만큼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부터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 상한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전자발찌 종료 2주만에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죄 이력' 60대 체포
檢, 넉달 前 구속영장 미청구

스토킹 피해 신고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해 출동했다. 이후 주택 내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이후 석방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며, 해당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